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제의요구안

의안 번호	228
----------	-----

제출연월일 : 2001. 10

제 출 자 : 서초구



1. 의 결 주 문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제의
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조례 제 정 경 위

- 발 의 : 총무재무위원회
- 의 결 : 제1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01. 9. 27)
- 우리구 이송 : 2001. 9. 28
- 재의요구기한 : 2001. 10. 18

3. 조례안 주요 골자

-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 결연을 통한 국내 및 국제 교류를
확대·내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안 제1조)
- 자매결연 대상은 서초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등이 대등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매결연 가능
국외 자치단체수는 7개 이내로 함. (안 제3조)
- 국내외 자치 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시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자매결연 유사 협정이나 의향서 체결시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안 제6조)
- 자매 결연후의 사후 관리 규정. (안 제8조)
- 자매 결연 취소시 구의회의 사전 의결. (안 제9조)

4. 재의 요구 사유

○ 정부간 조약 체결 준칙 위배

- 안 제6조(자매결연 체결등 의회 의결)중 의향서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은, 외교통상부의 국가간 조약 체결에 관한 준칙과 배치됨.
(국회 동의대상 조약이면서 서명후 비준하는 조약의 체결준칙 : 서명 → 국회동의 → 비준)

○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

- 안 제3조제2항의 교류 가능 해외 자치단체수 제한과, 안 제6조 제1항중 국내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과 동조제2항의 국내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유사협정 및 의향서 체결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나 권한없이 집행부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월권임.
- 안 제6조제2항의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경제교류 또는 문화예술 교류등 단순·일반 교류 협정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국회동의 대상 조약 유추해석시 구의회 사전 의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주민 편익제공 기회 박탈 및 국제 교류 역행등

- 국내자치단체간 자매결연과 국내외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유사협정과 의향서 체결시의 구의회의 사전 의결 및 협정체결 가능 해외 자치단체수의 제한은, 교류를 통해 우리구 주민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과 편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또 교류 지역 거주 우리구 주민이나 교포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할 수 기회를 차단함.
나아가 21C 국제화 다변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와의 교류나 협정 체결이 필요할 경우,
교류가능 도시수 제한 규정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포기하거나 또는 기존 교류중인
도시와의 교류 협정을 폐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

○ 조문간의 모순 및 상충

- 안 제1조(목적) 중 국내외 교류를 확대·내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조문과,

안 제3조의 자매결연 가능 국외 자치단체수를 7개 이내로 제한한다는
조문 및 안 제6조의 자매결연 유사 협정과 의향서 체결까지도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문은, 상호 배치되는 조문임.

5. 참고 사항

가. 재의 요구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⑧ (생략)

○ 지방자치법 제98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나.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관계법령 : 별첨

다. 서초구의회 이송 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제의요구안

2001년 9월 28일자로 서초구 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안 제3조제2항의 교류 가능 해외 자치단체수 제한과, 안 제6조제1항중 국내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동조제2항의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유사협정 체결과 의향서 체결시 구의회 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은, 법적 근거나 권한없이 집행부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월권임.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집행부의 권한과 재량권을 제한하는 본 조문은 월권으로서 부당함.

2. 안 제6조(자매결연 체결등 의회 의결)제2항중 의향서에 대한 구의회 의 사전 의결은 외교통상부의 국가간 조약 체결 준칙과도 배치됨.

- 국회 동의대상 조약이면서 서명후 비준하는 국가간 조약의 체결은, 정부대표의 서명후에 추후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비준함. 따라서 교류의 시초이자 상호 약속 단계인 의향서 체결은 구의회 의 사전 의결 대상이 될 수 없는 집행부의 재량권임.

- 나아가 의향서에 대한 구의회 의결은, 특정 도시로부터 교류 신청과 함께 의향서 체결을 요청하며 우리구 방문을 희망해 올 경우, 구의회 의 사정으로 방한 연기나 교류 불가를 통보해야 할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음.

3. 안 제6조제2항의 국내외 자치단체간 경제 또는 문화예술 교류협정등의 자매결연 유사 단순·일반 교류협정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국회동의 대상 조약 유추해석시 구의회 사전 의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우리구 조례로 일반·단순 교류 협정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요구는 부당함.
4. 국내자치단체간 자매결연과 국내외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유사협정 및 의향서 체결시 구의회의 사전 의결과, 협정체결 가능 해외 자치단체수의 제한은, 교류를 통해 우리구 주민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과 편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또 교류 지역 거주 우리구 주민이나 교포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할 수 기회를 차단함.
나아가 21C 국제화 다변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와의 교류나 협정 체결이 필요할 경우, 교류가능 도시수 제한 규정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포기하거나 또는 기존 교류중인 도시와의 적대감 표시인 교류 협정을 폐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자매결연 가능 자치단체수 제한이나 의향서를 포함한 일반·단순 교류협정까지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한 조문은 집행부에 대한 구의회의 월권일뿐 아니라 부당한 조문으로서,
협정 체결을 통한 현지 교민들의 사기와 현지 진출 경제인들의 간접적인 경제 활동 지원 측면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안 제1조(목적) 중 국내외 교류를 확대·내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한다는 조문과,
안 제3조의 자매결연 가능 국외 자치단체수를 7개 이내로 제한한다는 조문 및 안 제6조의 자매결연 유사 협정과 의향서 체결까지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문은, 상호 배치되는 조문임.

- 조례는 각 조문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례 제정 목적의 확대 조문과 안 제3조와 제6조의 제한 조문은 상호 배치되는 조문으로서 조례로서의 정당성을 위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자료 : 1 제의 요구 이유에 대한 관계법규 발췌문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관련법규]

○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가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한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외교통상부 국가간 조약 체결 관련 준칙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재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서초구”라 한다)와 국내외의 시·군·구 정부 등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내외자치단체”라 한다)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내 및 국제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자매결연의 대상 및 기준) ①자매결연의 대상은 서초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외는 7개 이내로 한다.

제4조(자매결연의 제외)①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국내외 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국내외 자치단체의 각종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성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

②국내의 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사전교류)①구청장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 국내의 자치단체와 충분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서신 및 자료교환시에는 양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책자, 팸플릿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자매결연 체결등 의회의결)①구청장은 국내외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서초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국내외자치단체와 우호도시협정, 경제교류협정등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및 자매결연의 사전단계로서 양 자치단체간의 의향서등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조(자매결연체결)①자매결연은 구청장과 당해 국내외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자치단체의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관심사항, 교류계획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당해 국내외자치단체의 장이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각각 보관한다.

제8조(사후관리)①구청장은 자매결연체결 및 상호교류추진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과 관련되는 의회의결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②자매결연 체결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유지

관리한다.

③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취소)구청장은 국내외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